

I

식품표시제도 일반

1. 일본의 식품 표시제도 관련 현안

가.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의 확대

- 의무대상품목의 선정요건 : 원산지에서 유래하는 원료의 품질의 차이가 가공식품(완성품)으로서의 품질에 크게 반영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품목 중, 단일 농축수산물의 중량의 비율이 50% 이상 되는 품목
- 절임류, 미역, 가츠오부시 등 8 품목으로 출발하여 현재 22식품군 4품목 등으로 확대추세 ※ 건조야채, 건조채소, 컷트야채, 떡, 녹차 및 녹차음료 등

나. 트랜스지방산의 함유량 표시

- 트랜스지방산을 섭취하면, 동맥경화 등에 의한 심장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 보고에 따라, 북남미 및 아시아 국가들은 영양성분표시일환으로 트랜스지방산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
- 일본 소비자청은 '11년 2월 21일, '트랜스지방산의 정보개시(開示)에 관한 방침'을 정하고 의무화를 추진 중임

다. 영양표시 의무화 검토

- 시판되는 식품에는 영양성분의 함유량표시나 ○○제로, ○○%제거 등의 강조표시,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양표시기준에 따라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음
- 영양표시의 의무화를 위해 '10년 12월부터 영양성분표시검토회 개최, '11년 영양성분표시검토회 보고서'를 작성하여 표시의 적용범위, 활용성 및 편의성을 위한 표시 방법, 감시, 집행체제 등에 대해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

영양표시기준

가. 함유량표시

- 영양표시를 할 경우, 필요표시사항
 1. 100g, 100ml, 1식분, 1포장 그 밖의 1단위당 열량 및 주요영양성분의 양(일반표시사항)을 표시
→ 열량(에너지), 단백질, 지질, 탄수화물(당질 및 식물섬유도 가능), 나트륨
- 임의표시사항
 2. 이하의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규정
→ 13 비타민, 12 미네랄, 당류(단당류, 이당류), 포화지방산, 콜레스테롤
 3. 영양표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양성분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, 임의로 표시해도 상관없음

나. 강조표시

- 영양표시기준 규정사항을 엄수하여, 일반표시사항을 표시
→ 절대표시(고~, ~함유, ~제로, ~없음 등)
→ 상대표시(~배, ~%제거)

다. 영양성분의 기능표시

- 17종류의 비타민이나 미네랄에 대해서, 영양성분의 기능은 표시가능

라. 식품의 기한표시

- 식품의 기한표시(상미기간, 소비기간)에 대해 일본 소비자청은 의견모집 및 의견교환회 등을 거쳐 '11년 4월 8일 '식품기한표시제도 개정방책을 위한 조치' 를 공표

	상미기한(賞味期限)	소비기한
의미	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(best-before). 이 기한이 넘어도, 즉시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님	기한이 넘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기한(use-by date)
표시	3개월을 넘는 것은 연월을 표시, 3개월 이내인 경우 연월일을 표시	연월일로 표시
대상	스낵과자, 컵라면, 캔제품 등	도시락, 샌드위치, 생면 등

○ 시사점

- 가공식품 '원료' 의 원산지 표기, 트랜스 지방산, 영양표시, 기한표시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있지만, 향후 제도의 법제화 및 확대에 따라 한국식품의 일본 수출시 필수 검토사항이 될 항목이므로 해당 제도에 대한 숙지 필요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/주의 사항

1. (오미자) 일반사항

○ 주요내용

- 오미자는 현재 '의약품으로 밖에 사용이 안 되는 원재료(성분본질)리스트에 포함되어 식품으로는 유통, 판매가 불가한 상황임
- 생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반 식품으로 판매 가능
 - ※ 단, 생약명이 아닌 식물명으로 명기하여 판매해야 함. 고려인삼은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량 배합 혹은 함유된 상품이 일부 식품으로 판매가능, 단, 약효를 강조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구분될 수 있음
- '의약품으로 밖에 사용이 안 되는 성분본질'에 등록된 원재료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, 그 물질이 배합되어있거나 혹은 함유하는 물질은 의약품으로 판단되어 일반 식품으로 판매가 불가함
- 분류는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감시지도 및 마약대책과에서 담당
- 의약전문가(교수, 연구원) 그룹에 의한 '의약품성분본질에 관한 위원회'를 통해 원재료의 분류, 제외, 재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음

III

통관 보류 및 해결, 폐기, 반송 사례 ('14년 5월)

월	품목명	제 조 자	부적합내용	수입자 명	조치상황
5월	고추	B사	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 검출 (지페노코나졸 0.02ppm검출)	H사	폐기, 전량회수

○ 시사점

- 고추

: 지페노코나졸 성분의 일본 기준치 상향조정으로 인한 기준치 위반된 사례로
일본 수출 전 반드시 한국 내 인증검사기관에서 해당 잔류농약 검사 후 수출
토록 관리 필요 ※ 4월에도 동일한 사유로 위반된 사례 발생한 적 있음